#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: 박선미 의원

제출일 : 2025. 1.

##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제명 변경·조례 목적 구체 화하고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명칭을 현행화해 조례 체계를 바로잡고자 함.
- 국·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개정 및 목적 구체화(안 제1조)
-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명칭 현행화(안 제2조제1호)
- 국·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의2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국·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새마 을운동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3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) 와 관련하여, 상위법인 「새마을운

동조직 육성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'국유재산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,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.'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조례에서 이러한 새마을운동중앙회등의 하부조직 또는 지회에 대하여 직접 무상대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가 있는바, 조례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■ 「**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**」(약칭: 새마을조직법) [시행 2019. 12. 10.] [법률 제16766호, 2019. 12. 10., 일부개정]

제4조(국유재산・공유재산의 대부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・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・양여하거나 사용・수 익하게 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■ 「**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**」(약칭: 새마을조직법 시행령) 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8조(국유재산・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) ①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・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는 <u>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,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</u>회, 직장・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. [전문개정 2012. 8. 13.]